

예 산 총 칙

2018년도 추경 3 회

제 1 조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7,213,046,961	216,391,409
일반회계		6,478,320,650	194,349,620
특별회계		734,726,311	22,041,789
기타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734,726,311	22,041,789
	코리아인터넷서킷 특별회계	4,170,616	125,118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42,929,893	1,287,897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410,069,339	12,302,080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5,658,643	169,759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25,716,721	771,502
	소방특별회계	245,428,125	7,362,844
	물이용부담금수질개선 특별회계	752,974	22,589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해당없음.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해당없음.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00,506,367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 한도액은 64,6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 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